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3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임종득 · 윤용근 · 유용원
김승수 · 김희정 · 유영하
김태규 · 서천호 · 이준석
윤상현 · 김기현 · 강선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

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 6항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예방”을 “예보·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재난예보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지리 정보, 기상 등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화재예보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감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소방서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을 “재난예보·안전”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4호 중 “재난안전”을 “재난예보·안전”으로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및 제2항 중 “재난예방”을 각각 “재난예보·예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재난예방”을 “재난예보·예방”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재난안전”을 “재난예보·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을 “예보·안전”으로 한다.

제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재난”을 “재난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방”을 “예보·예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예방”을 “예보·예방”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재난예방”을 “재난예보·예방”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제5호 중 “재난예방”을 “재난예보·예방”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재난예”를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예”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는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예방”을 각각 “예보·예방”으로 한다.

제74조의4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안전”을 각각 “재난예보·안전”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재난예방”을 “재난예보·예방”으로 한다.

제78조의4제2호 중 “예방”을 “예보·예방”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보 · 예방----- -----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설>	14. “재난예보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지리 정보, 기상 등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15. “화재예보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감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소방서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② (생략)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 ⑦ (생략)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③ -----

-----재난예보·안전-----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예보·안전-----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장의 재난예보·예방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난예보·예방-----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

-----재난예보·예방-----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재난예보·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
-----예보·안전-----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재난예보·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

-----예보·예방-----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

-----예보·예방-----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 예방조치 실적

3.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예보·예방-----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생략) 5. 그 밖에 <u>재난예방</u>에 필요한 조치 ⑥ (생략)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u>재난</u>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⑫ (생략)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u>예방</u>·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	1. ~ 4. (현행과 같음) 5. -----<u>재난예보·예방</u>-----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u>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u>에----- ----- 단 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는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u>예보·예방</u>-----
--	---

다는 사실

2. (생략)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
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 ⑩ (생략)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
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
의 수집·연계·분석·활용·
공유·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
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

2. (현행과 같음)

3. -----

-----예보·예방-----

⑤ -----

-----예보·예방-----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4조의4(재난예보·안전데이터
의 수집 등) ① -----

-----재난예보·

안전-----

② -----

-----재난예보·안전-----

-----재난예보·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

-----.

③ -----재난예보
· 안전-----

-----.
-----.

④ -----재난예보
· 안전-----
-----재난예보
· 안전-----
-----재난
예보 · 안전-----
-----.

⑤ -----
--재난예보 · 안전-----
-----재난예보 · 안전-----
-----재난
예보 · 안전-----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

한 징계 요구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한 징계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예보 · 예방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의4(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u>예방</u> ·대비·대응 이외 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 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 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 ----- <u>예보</u> · <u>예방</u> ----- ----- ----- ----- -----
---	---